

인조잔디(풋살)운동장 임대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구공업대학교 풋살운동장 임대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

*** 입찰참가신청서류는 반드시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됨**

나. 입찰 방법 : 경쟁입찰(직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제
- 부가세포함 12개월[1년] 임대 기준 **총액**으로 투찰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함

다. 임대보증금 : 30,000,000원

라. 시설 현황 (도면 참조)

시설구분	시설규모	사용방법	임대일수	부대시설
인조잔디축구장	6,000㎡	풋살6면 또는 축구 1면 선택 사용	98일	관리동, 조명탑6기
농구코트	31m*17m	농구 1면 사용	98일	
배구코트 (족구)	28m*17m	배구(족구) 1면 사용	98일	

마. 임대 방법 : 라. 항의 시설에 대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함

구 분		주 간 구 분	
		주중	주말(토,일)
풋살운동장, 농구코트, 배구코트	관리운영 주체	대학	임차인
	운영시간	07:00~23:30	07:00~23:30

바. 장 소 : 대학내 인조잔디(풋살)운동장

※ 유의사항

1.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을 낙찰자가 설치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대학 풋살운동장 이용 및 요금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https://futsal.ttc.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기간		입찰일시	개찰일시	입찰 및 개찰장소
등록시작일	등록마감일			
2018.4.02.(화) 15:00	2018.4.05(목) 18:00	2018.4.04.(수) 09:00 ~ 2018.4.06.(금) 16:00	2018.4.06(금) 17:00	본대학 1호관 2층 회의실

나. 본 입찰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직접 투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개찰장소는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실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의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의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대학규정 계약사무규칙 제1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서를 본 대학 총무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총액)의 5/100 이상] 납부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대학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현금 납부방법 : 수표로 납부(인수증 발부)

마. 제출서류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2)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실천 협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5)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현금 납부 가능) |
|---|

바. 서류제출방법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제출 가능)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본동) 총무부 입찰담당자 앞
- * 우편 제출 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마감일 전까지 서류가 도달하여야 함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함

6. 청렴계약 이행준수

-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개인 또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협약서에 의해 청렴계약이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가. 낙찰자는 입찰의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우리대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고된 개찰일시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리대학에서 별도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추첨에 의하여 동일가격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 라.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나. 본 입찰은 직접투찰로써 공고에 명시한 입찰일시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지정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관련한 공고 서류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라. 본 공고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

리대학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문의 : 대학 관리부 (☎ 053-560-3720)

2018년 3월 일

대 구 공 업 대 학 교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 번호	대공 20180326-1	개찰일시	
	입찰건명	대학 풋살운동장 임대차 계약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대학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모두 승낙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공업대학교 총장 귀하</p>				

※ 입찰서 중요사항

1.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신청인(우측하단)란은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한다.
2. 입찰시 대리인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과 전자입찰서의 투찰대리인도 같아야 한다.

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본 입찰유의서는 대구공업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교내 풋살운동장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대학에 귀속한다.

④ 위 ③항에 따른 소정의 기한이란 ‘대학’에서 낙찰자에게 통보한 기간을 의미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대학에 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으로 입찰금액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제 4 조 (입찰서 작성) 본 입찰은 **부가세 포함 최고가 총액입찰**이며, 입찰금액은 원단위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 5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6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 등록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투찰.

② 입찰 금액이 입찰 보증금액의 5분의 100이상이면 무효로 하고 차순위 투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 7 조 (낙찰자의 결정) ① 2인 이상 입찰참가 업체가 참가하는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학에서 별도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제 8 조 (계약금액 결정) 계약금액은 1년 기준 낙찰금액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한다.

제 9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동의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0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대학계약사무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13 조 (입찰연기 및 취소) “대학”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된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14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대학 계약사무규정을 준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공업대학교 계약담당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공업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공업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공업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공업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대구공업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8년 월 일

대구공업대학교

협력회사

총장 이 별 나 (인)

대표자 : (인)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구공업대학교(이하 ‘공단’ 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 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구공업대학교 징계규정 및 대구공업대학교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구 분	100만원 이하	100만원 ~ 300만원 이하	300만원 ~ 500만원 이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백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0호(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항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월 일

대구공업대학교

협력회사

총장 이 별 나 (인)

대표자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공업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공업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공업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공업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행동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공업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공업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구공업대학교 총장 귀하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대구공업대학교와 계약 체결하는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첨>

